

第 14 回 臨時會

2005. 3. 21(月)

檢 討 報 告 書

①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②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鷄 龍 市 議 會

專門委員 申 東 熙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개정에 따라
- 재난방재 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으로 정원이 증가되어 이에 맞게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 하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市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42명에서 14명이 증원된 256명으로 함(안 제2조)
 - ※ 직급별 증원현황 — 5급(2), 6급(3), 7급(5), 8급(3), 9급(1)
- 현재 규칙으로 정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(안 제3조)
 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별표1) 신설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행정자치부의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재난방재 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과
-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, 가축방역 인력 보강 등으로 총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 됨

檢 討 報 告

□ 改定背景

-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재난방재 기구 및 여유기구 등이 신설되고,
- 일부 행정기구의 폐치·분합 등으로 본청 기구 및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 하려는 것임

□ 主要内容

- 본청에 재난방재 업무를 전담하는 “재난안전관리과”를 신설하고 실·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 함(안 제3조)
-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“당면사업 추진단”을 신설 함(안 제3조의 2)

□ 檢討意見

- 본 개정 조례안은,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및 여유기구인 당면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,
-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폐치·분합 등으로 인한 실·과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